

---

# 국내외 가상자산 법 및 시장 동향

---

금융연구1실 디지털금융팀 유태이 매니저  
T. 051-631-2764 E. cindy@kbfc.or.kr

2025. 5. 2.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목 차

I. 국내 가상자산 법 현황	1
II. 국내 가상자산 법 향후 동향	4
III. 글로벌 가상자산 법 동향	8
IV.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	14
V.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동향	15

<붙임>

1. 국내외 가상자산 ETF 관련 동향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1 국내 가상자산 법 현황

## □ 가상자산 법 규제의 구분

○ 본 보고서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법 동향에 대해 다룸

가상자산 구분	관할 법
증권형 가상자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적용됨
비증권형 가상자산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에 대해 규율

## □ 2021. 3월 특금법 개정(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법제화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①매도·매수, ②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③이전, ④보관·관리, ⑤매도, 매수 및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 또는 ⑥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제한	-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급서비스업자 등)로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제한	- 특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마련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고객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행위 방지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절차·업무 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 및 기준 마련: 트래블룰 (Travel Rule)	-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 적용 개인 간 거래에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만 트래블룰 적용 - 트래블룰 적용 시기 : 2022. 3. 25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금융정보분석원)	-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행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 작성

## □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 2023. 12.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 해당 지침에 따라 2024. 1. 1일 이후부터 반영
-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명시된 의무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만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내부적으로 보유한 유보 토큰의 자산 인식을 제한하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 위탁 자산에 대한 통제권 판단 기준도 포함

## □ 2024. 7월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24. 2. 5 ~ 2024. 3. 4.)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

### <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나. 대표자·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임원이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 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 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 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 마.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4. 7월 가상자산법(1단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3. 7. 18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24. 7. 19일부터 시행
- 가상자산 기본법의 1단계 입법의 성격을 가짐
- 특정금융거래법에서 다루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관하여 새롭게 정의

<b>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예치금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li> <li>-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li> <li>-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함</li> <li>-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li> </ul>
<b>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li> <li>- 혐의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가능</li> </ul>
<b>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li> <li>- 금융위원회는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li> </ul>

**<가상자산법 제정 시 부대의견>**

- 가. (이해 상충 방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평가 분석하고 입법의를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나.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입법의견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에 대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라. **(실명계좌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 인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마. **(발행 및 유통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바.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금융위원회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정 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활용성 확대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서비스의 출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
- 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
- 아. **(가상자산 상장 및 내부통제 절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시행

- 2024.12.10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
- 가상자산은 2027. 1.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

## 2 가상자산 법 향후 동향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법안명	주요 내용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4년 9월 대표 발의 특금법 개정안(2203764)	-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요건 추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8월 대표 발의 특금법 개정안(2202608)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결과와 조치 내용 외부 공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대표 발의 특금법 개정안(2200466)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요건에 금융 범죄,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포함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법안명	주요 내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1월 대표 발의 가상자산법 개정안(2207226)	- 가상자산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반환 청구권 신설 등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025년 3월 대표 발의 가상자산법 개정안(2208717)	-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 임 근거 규정 신설 등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2025년 3월 대표 발의 가상자산법 개정안(2209075)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025년 3월 대표 발의 가상자산법 개정안(2209244)	-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대상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절차 통지 - 미반환된 가상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4월 대표 발의 가상자산법 개정안 (2209816)	- 가상자산거래소 업무 규정을 제정·변경·폐지 시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 보완 - 가상자산 시장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조치에 대해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입법 방향 논의(25년 2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주요내용)

- (목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로,
  -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와 유사한 통합법 체계 구축 목표
- 가상자산법체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b>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li> <li>-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li> <li>-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li> </ul>
<b>가상자산 거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을 위해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 제고</li> <li>-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li> </ul>
<b>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 부과</li> <l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 점검</li> </ul>

□ 25.3월 민관 공동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 주요 논의 사항 : ① 가상자산 정책 추진 경과
  -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
  -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
- 주요 논의 사항 : ②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
  -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의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 강구(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보완)
  -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는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 방안도 검토

-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비영리법인의 수령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

## □ 가상자산 업권법 2단계 입법 법안 발의 계획<sup>1)</sup>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5월 중 발의 예정
  -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업권법의 제정을 위한 1호 법안이 될 전망
- ①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발행인 자격 제한) 및 금융위 인가제를 통한 발행
  -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은 사전에 당국에 발행신고서 의무 제출
- ② (법정협회 신설) 시장의 자율적 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 법정협회 신설
  -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 가상자산 상장·상장유지·상장폐지 시에도 협회 심사
  - 가상자산 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사 1곳당 의결권 1개를 갖도록 하여 특정회사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함
  - 협회 산하 독립조직으로 ‘상장심사위원회’<sup>\*</sup>와 ‘시장감시위원회’<sup>\*\*</sup>를 둬
    - \* 상장심사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이 상장하거나 상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 특히 공시 위반, 전산안전성(해킹) 등이 발생하면 상장심사위의 직권으로 상장폐지 심사
    - \*\* 시장감시위는 상장된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회원사를 감시. 이상거래 발견 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 조치할 것을 통보
  - 기존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sup>\*</sup>(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함
    -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방안이 마련되도록 함. 위원회는 가상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 매년 1회의 실태조사를 의무화

1) 한국경제, [단독]가상자산1호 업권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신민경, 2025. 4. 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148376>

□ 기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

<p><b>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 예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포함해 개정할 예정(2025년 하반기 내)</li> <li>-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기업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 거래 내역은 한국은행에 월별 보고해야 함</li> </ul>
<p><b>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 감독 당국의 권고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능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li> <li>-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법집행기관, 비영리 법인, 가상 자산 거래소</li> <li>- (2단계) 투자 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전문투자자 등 금융 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li> <li>-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검토 예정</li> </ul>

### 3 글로벌 가상자산 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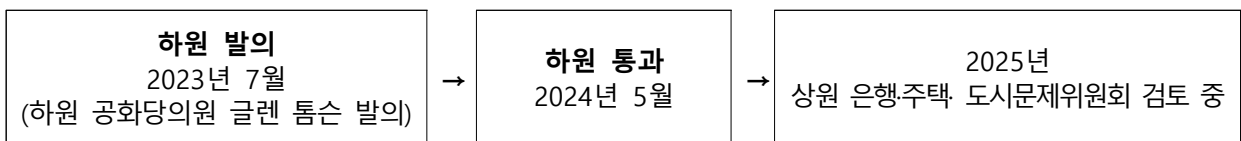
#### □ 미국<sup>2)</sup>

##### ○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규제 구조, 감독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자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라 규제 요건을 세분화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정도를 평가하여 디지털자산의 규제 방식과 소속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

분류	정의	관할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ies)	-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자산을 포함함 - 자산 발행자는 상품으로서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제한된 디지털 상품 (Restricted Digital Asset)	-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 - 특정 조건에 따라 SEC와 CFTC의 협력 감독을 받음 - 발행자는 연 2회 공시의무 이행	증권거래위원회 (SEC)
결제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s)	-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자산, 결제 및 거래에서 주로 사용 - 연방준비제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요건을 규정하며 발행자는 100% 준비금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 <법안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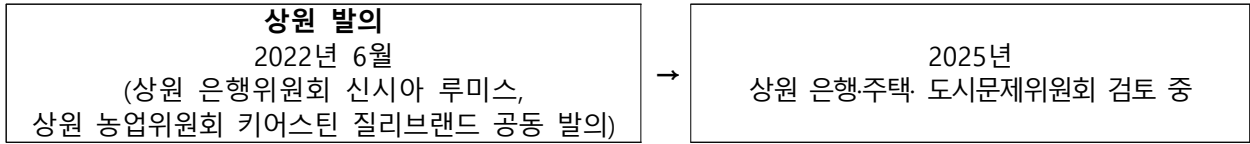
##### ○ 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RFIA)

-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부수자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범주를 도입하고 예금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규제체계를 마련

\* 부수자산은 투자계약에 따라 판매되지만, 보유자에게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과 같은 재무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상품으로 간주되며 CFTC의 관할권에 속함)

2) 출처 : (사)한국자금결제학회,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정책방향, 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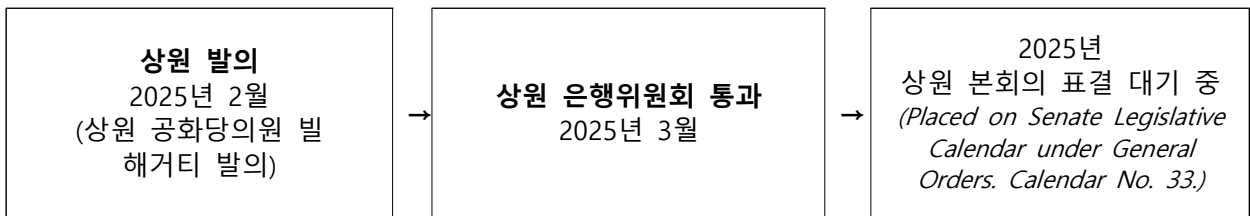
**<법안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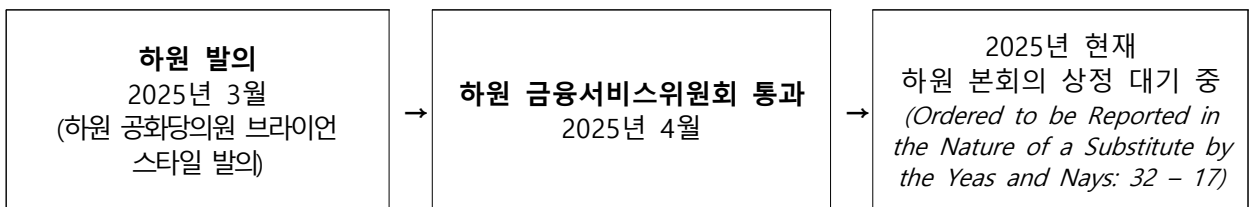
○ 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원 GENIUS Act · STABLE Act 발의

- 미국 연방과 주 차원에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 보호장치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제한 및 발행 요건, 연방차원의 주된 감독자, 통화감독청 (OCC)의 감독권한, 소비자 보호, 증권법의 정의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배제 등의 내용<sup>3)</sup>

**<GENIUS Act 승인 절차>**



**<STABLE Act 승인 절차>**



3) 출처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개요, 2025. 2

## □ 미국 트럼프 정부 관련 동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세계 암호자산의 중심지 “Bitcoin super power and 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고 선언
  - 2025년 1월,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행정 명령에 서명

###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및 정책)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
- 제2조(정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란 가치를 디지털적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분산원장에 기록된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함
- 제3조(이전 행정명령 철회)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14067(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과 2022년 재무부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 관여 프레임워크 행정명령 철회
- 제4조(디지털자산 시장 실무그룹 설립) 국가경제위원회(NEC) 내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실무그룹은 180일 내에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과 국가 디지털자산 비축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5조(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금지) 미국 정부는 CBDC의 설립, 발행 또는 축진을 금지하며 진행 중인 모든 CBDC 관련 계획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개발 금지 등

- 3월, 백악관 주관의 디지털자산 정상 회의 ‘Digital Asset Summit’ 개최,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자산 국고 설립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에 대한 추가 행정 명령에 서명

###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주요 내용

- 제1조(배경)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
- 제2조(정책 선언)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립
- 제3조(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 운영)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비축 계좌 운영 기관을 설립해야하며 연방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고 추가 취득 방안 및 입법 필요성 모색
- 제4조(회계) 모든 행정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수 회계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 및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에 제출

- 백악관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 차르는 형사 혹은 민사 재판과정에서 연방정부에 몰수된 가상화폐만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연방정부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유하기만 할 것이라고 밝힘(비트코인 추가구매 지시는 없음)

□ EU

- 최초의 포괄적 규제법안으로 각국의 규제지표가 될 수 있는 EU 가상자산규제법 (MiC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이 '24년 7월 일부 시행
-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체 및 저장 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증표로 정의
  - (적용 범위) 암호자산의 개념을 광의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법 적용
  - 암호자산을 크게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이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공식통화를 준거하는 전자화폐 토큰과 복수의 공식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 등을 준거하는 자산준거 토큰으로 다시 이분함

암호자산 구분		규제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 토큰	- 적격발행인 규제에 따라 당국의 인가 필요, 암호자산백서(사업계획)도 함께 심사
	자산준거 토큰	- 상환의무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지배구조, 자기자본규제, 내부통제, 준비자산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암호자산	유틸리티 토큰 등	- 유틸리티토큰 발행 당시에 해당 재화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 공모기간 12개월 넘지 못하도록 규제 - 이미 존재하는 재화나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유틸리티토큰의 공모에 대해 제2편(일반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적용을 면제, 유틸리티토큰은 공모의 경우에도 암호자산백서를 작성 및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함

- (적용 대상) 암호자산의 발행 공모, 상장에 참여하거나,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EU 내에서 적용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
- ①공모 및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정보공시·투명성 요건, ②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 및 토큰 발행자의 인가, 감독, 조직 및 지배구조 요건, ③토큰 보유자의 권리 보호, ④CASP 고객 보호 요건, ⑤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자 거래, 불법 정보공개, 시세조작 방지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 영국

- HM Treasury(재무성)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3가지 핵심 규제원칙 제시
  - ①동일리스크-동일규제, ②과도한 규제부담의 지양 및 규제 필요 분야 집중 ③시장과 기술발전에 대응한 유연한 규제 운영
- 기존 금융감독법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에 관한 법률(FSMA 2000)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체계 도입
- FSMA는 가상자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화폐법(EMR), 지급결제법(PSR), e-Money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
- 별도 규제 체계는 중복 규제 혹은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미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기존의 감독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차등적 이용자 보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N을 허용하면서도 개인투자자의 거래는 불허
-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에 편입하면서, 판매제한 고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위험경고, 거래유인 금지, 숙려기간 적용, 고객분류 및 적합성 평가 등의 제한을 적용

## □ 아부다비 (아부다비 국제금융 프리존 ADGM)

- UAE 법령은 아부다비, 두바이 등 7개의 모든 토후국(Emirates)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토후국별 법령으로 구분되며 두바이의 DIFC와 아부다비의 ADGM은 독자적인 법령을 두고 있음
- ADGM은 2013년 Abu Dhabi Law No 4, of 2013에 따라 금융자유구역으로 설립, 영국법 기반의 독자적 법 체계 구축
- 가상자산의 경우 연방의 증권상품감독청과 UAE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음(연방가상자산령(Cabinet Decision No. 111/2022)). 단, DIFC와 ADGM 제외
- ADGM 감독청 FSRA(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는 금융서비스시장 규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Regulation)에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sup>4)</sup>

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UAE의 가상자산 규율 현황.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8316#\\_ftn7](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8316#_ftn7)

- ADGM 자체 금융서비스 규제기관은 분산원장기술 재단 규제(DLT Foundation Regime)에 대한 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고
- FSRA의 주도 하에 가상자산 규제 제도(프레임워크) 구축(Guidance-Regulations of Virtual Asset Activities in ADGM)

**Guidance – Regulation of Virtual Asset Activities in ADGM(Virtual Asset Framework)**

- 적용대상

- a) ADGM 내 또는 ADGM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y)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인가(Financial Services Permission)를 신청하는 자
- b)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인가된 자(Authorised Person)
- c) ADGM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자간 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운영이라는 규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명령(Recognition Order)에 명시된 조건을 가진 인가 투자거래소(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
- d) ADGM 내 또는 ADGM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과 관련된 신청자·인가된자

- 디지털 자산 분류

분류 유형	설명	규제 접근 방식
가상자산 (Virtual Assets)	법정 화폐 기반이 아닌 가상 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품(commodity)으로 간주되나 FSMR상 특정 투자상품으로는 보지 않음
디지털 증권 (Digital Securities)	증권의 성질을 성격을 가진 디지털 및 가상 토큰을 포함	FSMR 58(2)(b)항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어 관련 1차/2차 시장, 거래, 보관, 자본 등 금융서비스 활동은 FSP 필요
법정통화 토큰 (Fiat Tokens)	법정통화로 100% 담보된 스테이블코인	송금 및 결제에 활용될 경우 FSMR 상 자금이전서비스(Providing Money Services)로 규정
파생상품 및 펀드 (Derivatives/ Fund)	디지털 증권, 가상자산, 유틸리티 토큰 기반의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	FSMR상 규제 대상 특정 투자상품, 관련 중개자 및 시장 운영자는 FSRA 인가 및 승인 필요
기타 디지털 토큰 (Other Digital Tokens)	유틸리티 토큰 등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	상품(commodity)으로 간주되나 FSMR상 특정 투자상품으로는 보지 않음

※ 참고자료 : Xangle 리서치, 윤덕근·홍진호·김제영 변호사, UAE와 바레인의 가상자산 법제 및 규제 현황

## 4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

### □ FIU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가상자산 시가총액 : 55.3조 원



-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 6조 원
- 가상자산 거래업자 총영업 손익 : 5,900억 원
- 가상자산 거래업자 원화예치금 : 5조 원
- 가상자산 종목 수 (중복 상장 제외) : 554종
- 거래 가능 이용자 : 778만 명
- 국내외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10개 비교

(단위 : 조원)

구분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			국내 상위 10개 종목**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종목명	시가총액	비중
1	BTC	1,717	54.4%	BTC	20.55	37.2%
2	ETH	573	18.2%	ETH	6.16	11.1%
3	USDT	157	5.0%	XRP	5.88	10.6%
4	BNB	119	3.8%	DOGE	1.53	2.8%
5	SOL	94	3.0%	ETC	1.47	2.7%
6	USDC	45	1.4%	SOL	1.25	2.3%
7	XRP	37	1.2%	SHIB	0.93	1.7%
8	TON	26	0.8%	BCH	0.74	1.3%
9	DOGE	25	0.8%	ADA	0.60	1.1%
10	ADA	19	0.6%	STX	0.38	0.7%

\* '24.6.30.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총 시가총액 3,125조원 추정)

\*\* '24.6.30.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기준 (국내 총 시가총액 55.3조원)

## □ 가상자산 거래소 수익 구조

- 가상자산 거래소별 거래 수수료 : △업비트 0.05% △빗썸 0.25%
  - 2025년 3월 기준 거래소 점유율 △업비트 70.8% △빗썸 25.4%
- 가상자산 거래소별 출금 수수료 : △업비트 0.0009 BTC(약 43,755원) △빗썸 0.001 BTC(약 48,616원)
- 기타 수익(예치금 운용 수익, 기타 서비스 등)

## 5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동향

### □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Coinmarketcap '25. 4월 기준)

-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Crypto Market Cap) : \$2.46조
- 최근 24시간 거래량(24h volume): \$1,290.4억
- 시장 점유율(Bitcoin Dominance) : 비트코인 62.6%, 이더리움 7.2%, 기타 30.1%

### □ 가상자산거래소

- 바이낸스(Binance) : 2017년 설립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25년 4월 기준 가상 자산 현물 시장 점유율 1위
  - (수익 구조) 현물 거래 수수료 회당 0.1%, 선물 거래 수수료 0.04%, 스테이킹 수익 등
- 코인베이스(Coinbase) :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나스닥 상장 가상자산 거래소
  - (수익 구조) 거래 수수료 0.5~4.5%(거래량, 가상자산 종류에 따라 변동), 스테이킹 수익 등

### □ 가상자산은행

- Anchorage Digital Bank : 미국 OCC의 Federal Trust Charter(연방 수탁은행 인가)를 획득한 받은 유일한 가상자산 전문은행으로 기관 대상 수탁은행
  - (주요 서비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보관), 결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 등

## **붙임** 국내외 가상자산 ETF 관련 동향

### □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동향

- 국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관련 ETF의 발행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중개 거래도 금지
-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 있음
  - '24년 1월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 (방안)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정의에 부합하도록 개정
  -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이어야 함
  -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금·원유 등 원자재와 파생상품 가격 등은 가능하나 제도권 밖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남
-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2025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정성국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 중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개정

\*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 미국 가상자산 ETF 동향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1년 10월 첫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Proshares의 비트코인 선물 ETF(티커 : BITO)
  - SEC와 그레이스케일(Grayscale)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송에서 SEC 패소
- 미국 SEC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출시 승인

- SEC는 거래소의 규칙이 “사기 및 조작행위와 관행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으며, 미국의 증권거래법 제6조(b)(5)항 및 증권거래법 제11A조(a)(1)(C)(iii)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sup>5)</sup>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성명

- 승인된 ETF: NYSE Arca: Grayscale, Bitwise, Hashdex  
Nasdaq: iShares, Valkyrie  
Cboe BZX: ARK 21Shares, Invesco Galaxy, VanEck, WisdomTree, Fidelity, Franklin
- 승인 근거: **A. §6(b)(5) - 사기 및 조작 방지**
  - 거래소들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감시 공유 협약을 체결.
  - SEC는 CME 선물과 현물 시장 간의 높은 가격 상관관계(98% 이상)를 분석해, 조작 시 CME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
  - 따라서 CME의 감시 체계가 현물 ETF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정.
- B. §11A(a)(1)(C)(iii) - 정보 투명성 및 시장 질서 유지**
  - ETF는 15초 단위 실시간 NAV(IIV) 정보 제공, 거래 감시 및 정지 조건, 공시 의무, 상장 유지 조건 등 기존 ETP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과 규제를 따름

### □ 해외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 동향

- '24년 1월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
  - 이후 70종 이상의 ETF가 발행되고 2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 관련 기관들이 7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됨(Coinmarketcap)
  - '25년 4월 기준 미국 BTC 현물 ETF 총유입 361억 2천만 달러, 총 거래가치 25억 8천만 달러, 총 순자산 948억 8천만 달러
- '24년 3월 영국 FCA, 4월 홍콩 SFC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허용
  - '25년 4월 블랙록, 영국 FCA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식 등록
  - '25년 4월 홍콩 BTC 현물 ETF 총 거래가치 565만 달러, 총 순자산 3억 5,377만 달러
- '24년 5월 미국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허용
  - '25년 4월 기준 미국 ETH 현물 ETF 누적 총 순유입 23억 6천만 달러, 총 거래가치 2억 3800만 달러, 총 순자산 62억 2천만 달러

5) 출처 : 법률신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하여, 2024. 01. 1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5093>